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 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의 서식 내용 중 서식의 근거가 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정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란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그간 인지된 불편사항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국내거소신고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9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 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생년월일이나 성별이 변경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의 유의사항 중 발급·열람 신청권자 범위를 관련 규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과 일치하도록 정정(안 별지 제7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는 본인의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으므로 법 규정과 서식이 일치하도록 정정

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의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7호)

-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서식 변경

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5호)

- 10년 전 흑백 인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현행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 최신화된 인쇄기법을 도입하고 사진크기·성명 인쇄 공간 확대 등 그간 인지된 불편 사항을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③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자 중 법 제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이전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생년월일이나 성별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국적 (Nationality)”를 “국가/지역(Country/Region)”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진 26mm x 33.5mm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거소신고번호 Registration No.	123456 - 1234567	
성명 Name	HONG SPECIMEN	
국가 / 지역 Country / Region	REPUBLIC OF UTOPIA	
체류자격 Status	재외동포(F-4)	
발급일자 Issue Date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CHIEF, ○○IMMIGRATION OFFICE		

85.6mm x 54mm(Polycarbonate 0.76T)

뒤 쪽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허가일자	만료일자	확 인
•국내거소(Address)		
신고일	체 류 지	
유효 및 취업가능 확인 www.hikorea.go.kr 민원안내 국번없이 ☎1345 (하 이 코 리 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번호	거소신고일	국내거소신고번호	구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구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성명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일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일	재발급사유	체류기간	비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BY AGENT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office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if you are applying for your own certificate.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Phone No.)		
	국내거소신고번호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발급대상자와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변경 이력 포함 여부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 미포함 No			
수량 (Copy(ies))	[] 거소신고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 copy(ies) [] 거소신고 열람 ()건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 time(s)			
용도 (Purpose)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nd Article 1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id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Gun·Gu or Eup·Myeon·Dong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 g/㎡) 또는 중질지(80 g/㎡)]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on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3. 다음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on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나.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Where a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 A.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B.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A)
 -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의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an overseas Korean,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overseas Korean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 Creditors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of the overseas Korean concerned
 -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에는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4.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5.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 방법) ①·② (생략) <u><신설></u>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자 중 법 제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이전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생년월일이나 성별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여하여야 한다.
<u><신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